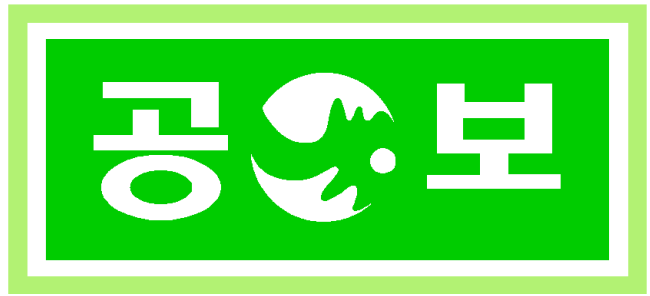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1038 호 2016. 11. 24. (목)

규 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86호[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2

훈 령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29호[울산광역시 북구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5

고 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95호[도로명주소 고시].....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96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97호[농소2동 통·반 조정 고시].....10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132호[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문].....13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6년 11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86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동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지원센
터”를 “청소년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생활체육협의회”를 “체
육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동주민센터” 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란 중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치행정과	16.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

④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동주민센터” 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2016.10.27.)에 따라 명칭변경 사항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 직영 운영으로 실정에 맞게 개정

- 보건소, 동주민센터 →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제2조제1호)

-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지원센터 (2조제2호)

나. 명칭변경 : 생활체육협의회 → 체육회 (제2조제3호)

울산광역시 복구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박 천 동



2016년 11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 훈령 제229호

울산광역시 복구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복구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3조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복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복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동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2016. 10. 27.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훈령 중 해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주민센터” 로 규정하고 있는 훈령

- 울산광역시 북구 일상감사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나. 명칭변경 :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195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화암3길 19(산하동)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1.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신하지구 648 5L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3길 19(산하동)	2016-11-24	화암마을 명칭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4-05-07	
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61-1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산업1길 6(중산동)	2016-11-24	이화 산업단지 내부도로라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5-02-02	
3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871-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4길 7(매곡동)	2016-11-24	기존 매곡산업단지 도로명과 연계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5-02-02	
4	울산광역시 북구 진곡동 625-2	울산광역시 북구 음달길 11(진곡동)	2016-11-24	기존 자연마을인 음달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법촌지구 308 6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5길 7(진장동)	2016-11-24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6	울산광역시 북구 진곡동 739-3	울산광역시 북구 덕곡길 43(진곡동)	2016-11-24	예전 지명인 덕곡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7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신하지구 488 8L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인로 1601(신하동)	2016-11-24	이 지역의 지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196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음달길 11(천곡동)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음달길 11	2016. 11. 24.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1. 24.**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97호

농소2동 통·반 조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통·반 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시행일자 : 2016. 11. 25.

통·반 조정내역

구 분	통			반			비고
	현 행	조 정	증 감	현 행	조 정	증 감	
계	224	226	증 2	2,043	2,066	증 23	
농소1동	28	28	-	323	323	-	
농소2동	37	39	증 2	415	438	증 23	
농소3동	39	39	-	427	427	-	
강동동	26	26	-	147	147	-	
효문동	30	30	-	251	251	-	
송정동	22	22	-	216	216	-	
양정동	20	20	-	123	123	-	
염포동	22	22	-	141	14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1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보호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맞게 상점가의 정의를 해석
-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

3. 근거법규

- 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제5조
-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창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창조경제과

- 전화번호 : 052-241-7702, 팩스번호 : 052-241-77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50개”를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조례 5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p> <p>5. ~ 8.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 ----- ----- -----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p> <p>5. ~ 8. (현행과 같음)</p>
<p>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p>
<p>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p>	<p><삭 제></p>
<p>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 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삭 제></p>
<p>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p>	<p><삭 제></p>
<p>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조례 제537호<2009.12.11.> 부칙 제1조(생 략)</p> <p>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생 략)</p>	<p>조례 제537호<2009.12.11.> 부칙 제1조(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3조(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사 제〉			
영수필독지서 (1) 영수필독지서 (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5.5.18>			
남북독지서			
<p>제 호</p> <p>세입과목</p> <p>위반사항</p> <p>년 월 일</p> <p>미 수 수</p> <p>지</p> <p>과태료 금액</p> <p>납입 기한</p> <p>납입 장소</p>	<p>년월일제</p> <p>(관)영수필독지서(1) (관)영수필독지서(2)</p> <p>세입과목</p> <p>위반사항</p> <p>년월일제</p> <p>미 수 수</p> <p>지</p> <p>과태료 금액</p> <p>납입 기한</p> <p>납입 장소</p>	<p>년월일제</p> <p>(관)영수필독지서(1) (관)영수필독지서(2)</p> <p>세입과목</p> <p>위반사항</p> <p>년월일제</p> <p>미 수 수</p> <p>지</p> <p>과태료 금액</p> <p>납입 기한</p> <p>납입 장소</p>	<p>년월일제</p> <p>(관)영수필독지서(1) (관)영수필독지서(2)</p> <p>세입과목</p> <p>위반사항</p> <p>년월일제</p> <p>미 수 수</p> <p>지</p> <p>과태료 금액</p> <p>납입 기한</p> <p>납입 장소</p>
<p>의미</p> <p>영수필독지서(1) 및 영수필독지서(2)에 대한 납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p>	<p>의미</p> <p>영수필독지서(1) 및 영수필독지서(2)에 대한 납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p>	<p>의미</p> <p>영수필독지서(1) 및 영수필독지서(2)에 대한 납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p>	<p>의미</p> <p>영수필독지서(1) 및 영수필독지서(2)에 대한 납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p>
<p>AROX 150mm</p> <p>신민용지 54kg/㎡</p>	<p>AROX 150mm</p> <p>신민용지 54kg/㎡</p>	<p>AROX 150mm</p> <p>신민용지 54kg/㎡</p>	<p>AROX 150mm</p> <p>신민용지 54kg/㎡</p>

현 행	개 정 안						
<p><삭 제></p>							
<p>【별지 제4호서식】 <개정 15.5.18></p>							
<p>제 호</p> <p>수 시</p> <p>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p> <p>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p> <p>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성 명</td> <td style="width: 25%;">(관 자)</td> <td style="width: 50%;">생년월일</td> </tr> <tr> <td colspan="2">주 소</td> <td></td> </tr> </table>	성 명	(관 자)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관 자)	생년월일					
주 소							
안 체 열	주 소						
과태료 처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td> <td style="width: 50%;">과 태 료 금 액</td> </tr> </table>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내 역	이 의 제 기 일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부과관청</td> <td style="width: 50%;"></td> </tr> </table>		부과관청					
부과관청							
<p>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p> <p>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p> <p style="text-align: right;">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종))</p>							